



제293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정현미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3. 3. 20

자치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정현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따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
(안 제36조)
- 나.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재산관리과
- 라. 입법예고 : 2023. 4. 5. ~ 4. 10. 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본 안건은 2021년 4월 20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2조가 개정됨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

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유재산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(寄附採納)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2. “물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(動産)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.
 - 가. 현금
 - 나. 유가증권
 - 다.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
3. “기부채납”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관리”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·운용과 유지·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5. “해당 지방자치단체”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6. “처분”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, 교환, 양여(讓與), 신탁,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7. “사용허가”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
8. “대부계약”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9. “변상금”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한 자(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

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무단점유자”라 한다)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- 상위법 개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「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 - ※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(안 제36조) 신설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재산관리과장 김주현